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제출년월일 : 2004. 7. 3.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주차장법령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 및 부설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설치에 갈음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안 제4조제3호다목)

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안 제13조)

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안 제14조의2제1항)

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4조의2제2항)

마.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안 제14조의2제3항)

바. 주차장법령에 의한 과태료부과사항으로 삭제(안 제18조의2)

마.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5)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제6항(부설주차장 설치비용)

-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비용 납부 등)

○ 입법예고 - 2004. 5. 18 ~ 2004. 6. 7 (20일간)

- 입법예고결과 : 의견내용 없음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고성군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0m이내 이어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를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로 하고, 동조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 을 삭제한다.

③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 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제곱미터로 한다.

③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의2 제목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으로 하고, 제1항 내지 제3항중 “장애인전용주차장” 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으로 각각 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1” 및 “별표5” 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노 상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초과 (1일주차)
	1구획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 분	노 외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 정기 주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간	야간	상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고성읍, 회화면 배둔리
 - 나. 2급지 : 면 지역(회화면 배둔리 제외)
4.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2:00(14시간)
 - 11월 ~ 3월 : 09:00 ~ 21:00(12시간)

[별표 5]

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제12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 150㎡)/100㎡}] ○ 다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외의 지역은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시설면적이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호)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생략) 1.~2. (생략) 3. (생략) 가 ~ 나(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4.~ 5.(생략)</p>	<p>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p>	<p>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u>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u> 4.~ 5.(현행과 같음)</p>	<p>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u>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u></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신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신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0m이내 이어야 한다.</p>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0m이내 이어야 한다.</p>	
<p>제14조(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주차장 무상사용) ①(생략)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p>	<p>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 “별표1” 의 금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p>	<p>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 “별표1” 의 금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p>	<p>제14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주차장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 “별표1” 의 금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시 만료일 1월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법 제19조의4 제3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 미만으로 한다</p> <p>④(삭제)</p> <p>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p> <p>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p>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영제6조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3(생략)</p> <p>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p>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p> <p>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p> <p>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p> <p>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제곱미터로 한다.</p> <p>③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1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p> <p>①-----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p> <p>1.~3(현행과 같음)</p> <p>②장애인전용주차구획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2(생략)</p> <p>3.<u>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u></p> <p>③<u>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1.(생략)</p> <p>2.<u>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④(생략)</p> <p>제18조의2(의견진술) ①<u>제1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u></p>	<p>1~2(현행과 같음)</p> <p>3.<u>장애인 전용주차구획</u> -----</p> <p>-----</p> <p>-----</p> <p>③<u>장애인전용주차구획</u>-----</p> <p>-----</p> <p>1.(현행과 같음)</p> <p>2.-----<u>장애인전용주차구획</u></p> <p>-----</p> <p>-----</p> <p>④(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의견진술) (삭제)</p>

(별표 1) -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노 상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초과
	1구획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구 분	노 외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 간	야 간	상 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2,5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고성읍, 회화면 배둔리
 - 나. 2급지 : 면 지역(회화면 배둔리 제외)
4.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2:00(14시간)
 - 11월 ~ 3월 : 09:00 ~ 21:00(12시간)

(별표 1) - 개정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노 상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초과 (1일주차)
	1구획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까지	1구획30분마다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구 분	노 외 주 차 장							
	1시간 까지			1시간 초과	1일 주차권	월 정 기 주 차		
	1구획 최초30분	1구획 10분마다	1시간 까지	1구획 30분마다		주 간	야 간	상 시
1급지	500원	200원	1,0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30,000원	55,000원
2급지	300원	100원	600원	300원	4,000원	25,000원	20,000원	35,000원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고성읍, 회화면 배둔리
 - 나. 2급지 : 면 지역(회화면 배둔리 제외)
-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주간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4월 ~ 10월 : 08:00 ~ 22:00(14시간)
 - 11월 ~ 3월 : 09:00 ~ 21:00(12시간)

[별표 5] - 현행안

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제12조 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다가구주택은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가구당 1대이상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시설면적이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별표 5] - 개정안

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제12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
4.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 - 150㎡)/100㎡)] ○ 다만,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외의 지역은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 1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 시설면적이 90㎡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호)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 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